

부산지방법원 2022. 9. 7 선고 2021나47394(본소), 2021나47400(반소) 판결

[임대료 · 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변 론 종 결 2022. 7. 20.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3. 10. 선고 2020가단220487(본소),
2020가단220494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(반소원고)의 반소를 각하한다.
2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3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 11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12. 17.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9. 22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[피고는 주식회사 F(변경전 상호: 주식회사 E, 이하 ‘F’이라 한다)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돈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가 F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양수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]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 원고는 피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. 9. 22.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반소(양수금청구의 소)의 적법 여부

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.

피고는 F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150,000,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, 원고에게 위 150,000,000원 중 50,000,000원의 지급을 구한다.

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,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,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,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,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

한다(대법원 2004. 3. 25. 선고 2003다20909, 20916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을 제12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의하면, F은 2021. 4. 30. 원고에 대한 150,000,000원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,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(을 제12호증의 1에는 피고가 통지인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내용상으로는 F이 통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)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런데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가 F에게 채권양수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F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등 기존에 F이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할 만한 법률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, 피고 스스로 제1심법원으로부터 피고가 F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패소하자 이 사건 반소청구를 계속하기 위해 F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, 위 채권양도는 오로지 소송행위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,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.

2. 본소에 대한 판단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(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,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(피고의 종전 반소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).

재판장 판사 박우중, 판사 강태규, 판사 주문식

문 록

부동산의 표시

부산광역시 기장군 오피스텔

철근 콘크리트조 (철근)콘크리트 지붕

8층 업무시설 (오피스텔)

(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)

1. 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4.08㎡2. 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0.44㎡

-이 상-

